

이사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연맹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제 4 조 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하며 이사장이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른다.

제 6 조 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,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월 개최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 ① 정기이사회는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시이사회는 하루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연맹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

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대의원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대의원총회의 소집
 - (2) 운영성과표
 - (3) 재무상태표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회기 내 사업계획 업무보고
 - (6) 기타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연맹운영에 관한 사항

- (1) 연맹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연맹사업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시상자 선정
- (5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- (6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- (7) 중요한 제규정의 개폐

3. 제도에 관한 사항

- (1) 연맹의 규칙 및 규정의 개폐
- (2)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3)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4) 선거관리위원회 선임
- (5) 본부 설치 및 통합

4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(1) 각 본부의 업무보고확인 및 승인
- (2) 가입비 및 회비의 승인
- (3) 칼지 배포 및 확인
- 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1 조 (이사의 업무분장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업무를 정한다.

② 이사의 업무분야 : 특정업무담당이사 3명 포함 10명

으로 총무, 교육, 기술, 제도, 홍보, 회원관리, 본부관리, 재난안전, 칼지편집 및 홈페이지 관리 등.
단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재편성을 할 수 있다.

- 제 12 조 (의사록)**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③ 회원은 사무국 근무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.
④ 연맹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불여 이를 거절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.

- 제 13 조 (간사)**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.